

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개정('17.12.26.)으로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5.7.22.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 안내를 위해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5항제3호)

- 1)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정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변경(안 제5조의2)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와 보호자등에게 공제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서식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 등의 개인정보(성명, 사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4. ~ 7.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사건번호				보고일자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사고자 구분	연락처
	보호자등	성명	사고자와 관계			연락처	
지도교사		작성자	성명		연락처		
사고관련자	성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성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개요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④ (생략)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u>한국소방안전협회</u> 4. (생략)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한국소방안전원</u> 4. (현행과 같음)